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Ⅱ)

박 인 수*

I. 머리말

'시이에스의 저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눌 수 있다.

시이에스가 발표한 제1부는 목차 그 자체가 대단히 유명한데 여기에서 저자는 주요한 세 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있다.

제1장.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제2장. 현재까지 제3신분은 무엇이었던가?

제3장.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하여 시이에스는 프랑스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제3신분은 프랑스 정치사회에서 현재까지는 무의 존재였으나 삼부회를 통하여 중요한 존재로 변신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Ⅱ)에서는 (I)에서 다루었던 제1장과 제2장에 이어 제3장,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부분을 완역하고자 한다.¹⁾

저서의 2부에서 시이에스는 내각과 특권신분들이 제3신분에게 현재까지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에 대한 결산을 함으로써 시작한다. 마지막장의 앞장에서 시이에스는 제3신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원서로는 E.J.Sieyès의 'Qu'est-ce que le tiers-état?'의 제4판을 참조하였다.

분이 행하였더라면 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서 남아있는 할 일을 기술하고 있다. 즉,

제4장. 각료들이 시도하였던 것과 특권신분들이 그들의 취향에 따라 제안하고 있는 것

제5장. 우리가 행하였더라면 할 것

제6장. 마지막으로, 제3신분이 합당한 지위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2부에서 사제 시이에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제3신분은 삼부회와 별도로 그리고 국민에 포함될 수 없는 귀족과 성직자와 같은 두 개의 특권신분들 없이 헌법을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국민의회(Assemblee Nationl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분석과 주장은 여론에서 대단한 반향을 가져왔으며, 왕실조정을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넣었으며 검찰총장 Segnier는 이 저서를 분서시켜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이는 수개월 후 France에서 발생한 것들을 미리 나타낸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무엇이 되는 것

제3신분의 요구를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만 다소간 고찰되어진 몇몇 저자들의 고립적 견해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도 제3신분은 자신의 요구에 있어서 대단히 양보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사회를 연구한 사람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공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공통관념에 의거해서도 그렇다. 제3신분의 진정한 청원이 무엇인지는 프랑스의 거의 모든 시·읍·면이 행정부에 보낸 확인된 상소문에 의해 서만 판단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인민은 자신이 그 무엇이기를, 실제로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기를 원한다. 제3신분은 ① 삼부회에 자신들의 대표, 즉 자신들의 소망을 대변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신들의 신분 계층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삼부회에서 그들에게 반하는 이익이 지배적이라면 삼부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들의 참석은 그들을 영원한 회생물로 만드는 암체를 확고부동하게 해줄 뿐일 것이다. 따라서 제3신분이 최소한 특권 신분의 영향력과 동일한 힘을 가질 수 없다면 삼부회에 투표하려 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3신분은 또한 ② 다른 두 신분 계층 대표자 전체와 동일한 수의 대표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각 신분별 의회가 분리된 채 표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수적 동등함은 결국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신분은 ③ 삼부회에서의 투표가 신분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²⁾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권층을 경악시킨—특권층은 이것 때문에 권력 남용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믿었던 것이다—시·읍·면 상소문들을 요약한 것이다.

제3신분의 최소한 목적은 삼부회에서 특권 신분의 영향력과 동일한 힘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3신분이 그 이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 또한 삼부회에서의 제3신분의 영향력이 동등하지 못하다면 제3신분이 정치적 무능력에서 벗어나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애석한 점이 있다면, 제3신분의 상소문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만으로는 제3신분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이러한 동등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3신분은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선출된 동일한 수의 대표자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나, 특권층의 영향력은 제3신분의 성역에도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제3신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직책, 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측에 있으며,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측에 있는가? 이러한 고찰만으로도 모든 인민 친구들을 떨게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에 의해 자신들 신분의 이익을 지켜내기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 비특권 신분 사람들은 혹시 귀족들에 대한 맹목적이거나 강압적인 존경심 속에 교육되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관습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선시키는 데 끊임없이 골

2) 12월 27일의 내각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에게 두 번째 요구는 인정하였으나, 세 번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도 없으며, 첫 번째는 대단히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것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한가? 그것들은 전체로서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를 파괴하게 되면 이것은 세 가지 모두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헌법에 관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는 후술할 것이다.

몰하며, 개인적인 사업이 진실한 수단에 의해 진척될 수 없을 때 기만적인 노선에 빠져들게 된다.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인민의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고되거나 고차적인 훈련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아이들을 단련시키는 방법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제3신분 중 가장 약삭빠른 집단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명예롭거나 사회적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권력 있는 인간들에게 헌신하고 아첨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애석하게도 전체 국민 중 이러한 부류가 거대한 하나의 전위 부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주인이 명령하거나 행하는 것에 끊임없이 물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대가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을 보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선입견을 옹호하는 데 물들지 않았다고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귀족 정치를 가장 뻔뻔스럽게 옹호하는 자들은 제3신분 계층 내에도 존재할 것이며, 재능은 뛰어나나 영혼이 빈약하게 태어난 탓에 귀족들의 칭찬과 권력·출세에는 급급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존재할 것이다.

프랑스의 모든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귀족 정치나 대부분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이 봉건적 인습의 지배력 이외에 재산의 영향력도 행사되고 있다. 재산의 영향력은 당연한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특권 신분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3신분을 억압하는 강력한 밸침대를 특권 신분에게 제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이다. 특권층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과 인민의 대표를 서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시·읍·면에서는 너무 쉽게 믿고 있다. 다소 친인민적인 봉건 영주라면 사골과 프랑스 전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인민 집단을 그의 명령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인가? 이러한 첫 번째 영향의 결과와 반향을 염두에 두어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차적 이해집단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나 그래도 역시 이러한 일차적 요소들의 결합에 해당하는 단일 의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제3신분의 세 가지 요구사항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이러한 요구사항들마저 강력하게 논박되었다. 대단히 역겨운 이러한 적대행위의 논거를 검토해보자.

III. 첫 번째 요구

제3신분의 대표자는 진정 제3신분에 속하는 시민 중에서만 선출될 것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제3신분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특권으로도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당장 완벽하게 이를 없애버려야 한다.

어떤 관문을 통해 귀족에 이르게 된 존재인 법조인들은—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관문을 통과한 후에는 그 문을 봉쇄하기로 결정했다³⁾—기를 쓰고 삼부회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귀족은 우리측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제3신분 측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의 개별 신분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만족할 만한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귀족들로 하여금 제3신분을 대표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이전의 권력 남용을 유지하는 일만이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좌절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신귀족은 출신이 어떻건간에 사고 방식이 동일해, 자신들이 제3신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 말하기에 급급하였다. 서로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구귀족들로서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유지할 만한 동일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귀족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 구귀족은, 자기 자식들을 평민원(*la chambre des communes*)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들이 제3신분을 대표한다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의사가 제대로 결정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결코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제3신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제3신분을 배제하는 선대의 관행……, 탁월한 관행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신분 계층은 공민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들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⁴⁾ 처음의 두 신분에게는 유용하고 세 번째 신분에게

3) 그들은 향후에는 잘 구성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 속에는 겸손한 체하면서 오만함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떼거리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법조종사자의 모든 자리들이 오늘날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들 이외에는 거의 소속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을 탐내고 있는 귀족주의(aristocracisme)에 대하여는 전술하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4)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추후 상술될 것이다.

는 불행이 되도록 신분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두 신분에게는 여전히 득이 되지만 전체 국민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때 곧바로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버리는 것, 이는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성직자와 귀족이 제3신분의 의회를 가로채버릴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관행은 얼마나 훌륭한 관행인가! 솔직히 말해서, 제3신분이 처음 두 신분의 대표관계를 잠식할 수 있다면, 이 두 신분이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들을 최대한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나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장하겠는데, 세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표할 수 있게 해도 된다면, 의회에는 단 하나의 신분의 구성원들만 있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직자 신분 혼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까?

얘기를 좀더 진척시켜보자. 세 가지 신분층의 신임을 하나의 신분에게 맡긴 후, 한 개인으로 하여금 모든 시민을 대표하도록 해보자. 이 경우 일개인이 삼부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원칙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위임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러한 논점을 밝히기 위해 나는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겠다. 첫째는 어느 것이 보다 신의롭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본인은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농촌의 농부들이나 기타 주민들에 대한 귀족들의 지배력을 알고 있으며, 봉건 영주들의 법률 자문단을 포함해 봉건 영주 휘하의 수많은 대리인들이 행하는 일상적이거나 또는 가능한 만행에 대해 알고 있다. 따라서 제1차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봉건영주는 봉건영주 자신들 중에서이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보다 긴밀한 신임을 받는 자들 중에서 선출되거나 간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선거구에서 대표로 임명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실한 일이다. 봉건영주의 신임을 탐지하고 간파할 권한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인민의 자유를 위해서인가? 자유에 완전히 반하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 자유라는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임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야만 하며, 따라서 인

민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데 대단히 익숙해 있는 모든 특권층을 위임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나의 두 번째 근거는 직접적이다. 어떠한 영역에서건 간에 한계가 없는 자유나 권리라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국가에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누구도 유권자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법률은 선거구 유권자를 대표하기에 부적합한 최저 연령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간에 도처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종류의 위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유랑인이나 거지에게 인민의 정치적 신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다. 주인에게 종속되어있는 모든 사람과 하인,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 전체 국민의 대표자들에 끼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따라서 정치적 자유에도 공민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제3신분이 주장하는 피선거권 결격 요건이 내가 방금 지적한 모든 요건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자 하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거지나 외국인은 제3신분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며, 반면 귀족과 성직자는 신분상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에 맞고 사물의 본성에 부합하는 법률이 대표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요건 중에서 제3신분에 의해 요구된 요건이 제3신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다.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 중에 있으며, 전쟁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일이 우리측에서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통령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주민의 대표들이 영국 내각의 각료를 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과연 허용될 것인지 의문이다. 전쟁의 시기에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의 적인 것과 같이 특권층은 당연히 공통 신분의 적으로 암시된다. 나의 뇌리 속에 겹치며 스쳐가는 영상 속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해상 인민의 총회에서 항해의 안전과 자유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 제노바, 리보르노, 베네치아 등이 바르바리아 출신을 전권 대사로 선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또한 부유한 해적들이 제노바 등지의 유권자 표를 매수하거나 농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비유가 과장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비유는 내가

주장한 바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동불을 헛되이 오랫동안 켜둘 수 없으로, 언젠가 귀족 정치가 프랑스에서 알제리인들이 보이는 것을 차단하게 되기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기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처음 두 신분의 구성원에게 너무 배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제3신분의 사람들이 공통 신분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묵인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종속적인 지위 때문에 그들은 공통 신분의 신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배타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족들의 영향력은 이미 그들 자신에게 무용한 것이 되어, 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사할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특히 봉건주의의 수많은 첨병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주장한다.⁵⁾

프랑스의 불행을 위해 여전히 존속하면서, 세개의 신분을 서로 적으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도 이 미개한 제도의 가증스러운 찌꺼기 탓이다. 봉건주의의 수임자들이 공통 신분의 대표관계를 점령하기 위해 몰려오게 되면 모든 것은 수포가 될 것이다. 하인들이 오히려 주인 자신들보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 더욱 냉혹하고 더욱 무모하게 구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나는 이러한 금지 부류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봉건 영주의 모든 법무 담당자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여기에

-
- 5) 이러한 첨병들 측에서의 수많은 행패들은 아직까지 시골사람들을 몹시 슬프게 하고 있다. 특권 신분은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또한 귀찮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 백개의 팔을 가진 세무공무원을 인민들에 대하여는 거의 진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다. 음! 마치 봉건제도의 앞잡이들처럼, 마치 귀족정치에 종속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명칭이나 제복의 인간들이 실제로는 제3신분에 속하고 있다는 것처럼, 인민의 진정한 적들은 제3 신분 내에 있다는 점을 인민들에게 암시함으로써 귀족들은 감히 그렇게 많은 악행의 자격이 있는 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아니한가? 이것은 너무나 진실한 것이다. 인민의 가장 위험한 적들이 특권층들이 그들의 용무를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이것이 특권 신분의 이름 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이익으로부터 격리된 계급에 있다. 프랑스에서, 네델란드에서 그리고 도처에서 우리는 사회의 최하계층과 특권계급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연적 결합의 가공할만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진실을 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la C...는 귀족에게 속한다.
 - 6) 세습재산적 법무직! 전전한 정치에 이것보다 더 반하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어렵다. 봉건적 무질서라는 폐허를 가장 많이 세워올렸던 자들은 아마도 법률고문들임에 틀림없는 것인데; 법률적 형식의 음흉한 발판을 가장시켜 놓고, 아마도 여기에 새로운 합정의 씨앗을 뿠었던 자들. 여기에서 공적작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는, 그리고 소위 군주정치제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수천 조각으로 깨어진 왕권과 정당한 소유주로 변형된 도적들을 아무런 동요 없이 보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지 못한 재산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사물의 본성이 있다.

도피네 지방이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예를 제공했다. 도피네 지방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계 종사자들, 그들의 보증인들, 행정직 종사자들 등에게서 제3신분의 피선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두 신분 소유 농토의 소작인들에 대해 서로 말하자면, 나는 그들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공통 신분을 위해 자유롭게 투표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종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언젠가 농업의 이익, 공적 번영과 공민 정신의 이익을 밝히는 데 동의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악착 스러운 국고 충당을 정부의 업무와 혼동하는 것을 결국 중단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소작농에게는 종신 임대차계약 같은 것이 허용·장려될 것이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이러한 소작농들을 자유 보유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적절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⁷⁾

이라는 용어 하에서 진정한 재산에 가장 반하는 것, 예를 들면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권리 같은 것이 여기에 스며들 수 있었다고 깨닫지 못할 것인가? 소유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취득이 있는가? 결코 개인의 재산으로는 당연히 될 수 없으며 주권적 의무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는 공적작용에 대하여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공통적 재산 또는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말하고 있다. 봉건영주가 무엇이며 그가 가신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나에게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이러한 형 이상학적 관계(본인은 여기에서 금전적 또는 현실적 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는 바람직한 정치적 결사에 해당하는가? 재산이라는 용어의 후견에 현실적인 도둑질, 결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는 이러한 도둑질이라는 의미를 감추고 있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실제로 경찰이 없으면, 불한당이 대로상에서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다고 가정하면; 불한당이 통행세의 진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꽤 혼하였던 이러한 종류의 독점을 선의의 승계자에게 팔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취득자의 수중에서 보다 존경할 만한 것으로 될 것인가? 왜 우리는 항상 권리의 복원을 절도보다 더 불가능하거나 또는 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가? 셋째로 법적인 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것(*la chose publique*)에 해롭다고 판단될 수 있는 소유취득이 있으며; 이것들은 당연히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 역시 소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필요한 정치적 선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산이라는 신성화된 이름 앞에서 우리 모두 무릎을 끓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재산을 가장 적게 소유한 자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보다 여기에 대하여 보다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거짓된 것을 꼬집어 뜯는 것을 진정한 재산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7) 그가 제3신분의 주장이라고 일컫는 것을 빙정거리고자 하는 귀족은 항상 이 신분을 그의 마구공, 구두장수 등으로 혼동하는 체하며; 따라서 그가 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경멸을 불러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러나, 덜 고상한 직업들이 전체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이러한 직업들이 제3신분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반대로, 제3신분 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자 할 때 다른 계급들을 구별하는 것을 대단히 잘 알고 있으며; 어느 한 쪽 대 다른 한 쪽을, 도시주민 대 농촌주민을 선동하고 봉기하게 한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과 맞서게 하도록 한다. 모든 것

제3신분은 제3신분을 대표할 만큼 명석하고 용기 있는 성원을 갖지 못해서, 귀족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방금 근절한 문제점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제3신분 중에서 자유로운 계층을 고려해보자.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여유로움으로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양식을 함양할 수 있고 마침내 공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자유로운 계층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계층들은 여타 인민의 이익과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로운 계층이, 모든 점에서 전체 국민의 훌륭한 대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받았고 정직하고 품위 있는 시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그러나 끝내 선거구가 제3신분의 위임을 귀족이나 성직자에게만 부여하고자 하면서 제3신분을 신임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제한의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피선거 자격에 부과되어 있는 모든 요건 중에서 제3신분이 주장하는 요건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보다 즉각적으로 해답을 모색해보자. 한 선거구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해를 끼치려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문에 그 선거구는 다른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수임자의 활동에 나 자신만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왜 당신은 그를 선택하는 잘못을 범했는가?’라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의 대표자들은 그들을 선출한 선거구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위해 투표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공통의 규범과 요건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몇몇 유권자들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을 말하도록 허용된다면, 세련된 위선행위의 회통적 성격에 대하여 얼마나 언급하였던가! 아무리 하자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을 구별하는 직업의 차이가 아니며, 재산의 차이도 아니며, 지식의 차이도 아니며, 이것은 이익의 차이이다. 현재 질문에서는 특권계급의 이익과 비특권계급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제3신분의 모든 계층은 특권층의 탄압에 대항하는 공통적 이익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

IV. 두 번째 요구

제3신분 대표자의 수가 두 특권 신분 대표자의 수와 동일할 것

다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의 무기력한 불충분성은 다시 그 이전의 시대를 회상하게 한다. 왕국의 도시들은 문명의 진보와 심지어 공중의 여론 자체도 잘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은 2표 대 1표를 주장함으로써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피했을 것이며, 따라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며 맞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평등을 그들에게 서둘러 제공했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요구, 자신의 의사, 용도를 밝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원칙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민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도 시민의 자격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재산은 각 개인이 출세나 향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재산의 과다에 상관없이 만인에게 동일한 것이다. 유권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은 자신을 대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의 일부분일 수 없다. 이 권리는 단일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제정하고자 함께 협력했던 법률에 의해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만큼 이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한다. 어떻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법률이 일반 의사, 즉 과반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10명의 개인적 의사가 1,000명의 개인적 의사와 맞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소수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명백히 사물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확실한 이런 원칙들이 대부분 공통의 관념으로부터 도출된다면, 본인은 독자들에게 현재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곧바로 인도하고자 한다.

푸아투(Poitou)와 같은 거대 선거구가 젤스(Gex)와 같이 작은 선거구에 비해 삼부회에 보다 많은 대표를 보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보이는게 사실이 아닌가? 왜 그러한가? 푸아투의 주민수와 조세 부담이 젤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표의 비율을 결정하는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 부담으로 대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신분별 과세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제3신분이 전체 과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구에 있어서도 제3신분이 첫 두 신분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실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추산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성직자. 부속 성당을 포함해 본성당을 40,000개로 계산하면 부속 성당의 주임 사제를 포함해 전체 주임 사제 수를 단번에 산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40,000명.

네 개의 본성당별로 주교 보좌 신부 또는 보좌 수녀, 이것이 10,000명.

주교 성당의 수는 교구수와 동일하며, 20명의 참사회원—그 중 절반은 수녀—별로 140명의 주교 또는 대주교, 이것이 2,800명.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성직자 회의의 참사회원 수를 두 배 정도로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5,600명.

이러한 계산 이외에, 단순한 성직자 숙소나 수도원, 수도원장 관사와 예배당 같은 곳에 있는 성직자의 수만큼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성직자 숙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은가. 주교와 참사회원이 동시에 수도사이며 수도원장이며 예배당 전속 신부이기 때문이다. 이중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직자 수를 3,000명으로 보면, 이것이 3,000명.

또한 어떤 종류의 성직도 갖지 않았으나 당연히 성직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수를 3,000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3,000명.

가속화된 진보 속에서 30년 전부터 감소한 수도사와 수사가 남아 있다. 오늘날 17,000명을 넘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17,000명.

성직자 총인구 81,400명.

귀족. 이 신분에 속한 개인의 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나는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한다. 귀족의 수가 가장 잘 알려진 지방을 모델로 하여 프랑스의 다른 지방과 비교하는 것이다. 브르타뉴가 이러한 지방에 속한다. 결코 귀족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지, 귀족 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권 때문인지, 브르타뉴에는 다른 지방보다 귀족의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브르타뉴에는 1,800개의 귀족 가문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나는 아직 귀족 신분을 얻지 못한 가문들까지 포함해 2,000개 정도로 본다.

각 가문당 5명이 딸려 있다고 추산하면, 브르타뉴 지방에는 모든 연령과 성별을 포함해 10,000명의 귀족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브르타뉴의 전체 인구는 2,300,000명이고,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와 대비하면 1:11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10,000명 곱하기 11을 하면 국가 전체의 귀족수는 최대 110,000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 두 특권 계층의 총인구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⁸⁾ 이 수와 2,500

8) 이 점에 관해서 살펴보면 성직자의 총수에서 집단수도승 이외의 수사와 수녀를 제외시키면 7만 명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진정 시민, 남세자이며 유권자로서 자격이 있다. 귀족신분 중에 비남세자이며 비유전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시키고 나면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자는 겨우 3만 내지 4만 정도 남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체국민대표에서 상대적으로 성직자는 귀족보다 매우 큰 집단이다. 본인은 이러한 식으로 관찰하며 이것은 현재의 선입견이라는 물결에 반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인은 권력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며; 맹목적인 홍보에 이끌려진 제3신분이 성직자보다 귀족이 두 배 이상의 대표자를 가지게 된 규정을 찬양하면 이것은 이성도 정의도, 그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제3신분에게 말하고 싶다. 민중은 그 순간의 선입견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외의 것은 결코 볼 수 없는가? 성직자란 무엇인가? 교육과 종교의 공적작용을 부담하고 있는 수임자 기관. 그것으로 내무행정을 변화하게 하고; 다소간 그를 개혁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형식이나 또는 다른 형식 하에서 필요하다. 이 단체는 결코 배타적인 신분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져 있으며; 이 단체는 국가에게 거의 비용을 치르게 하지 않는 식으로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본당 신부들에게만 지불하기 위하여 왕실재산에서 비용을 치르게 하는 정도만 생각 할 수 있으나. 교회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게 될 남세액의 중대는 깜짝 놀랄만한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단체가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위계질서 내에 있다. 역으로, 귀족은 그가 경멸하는 제3신분과 분리되어 있는 배타적 신분이다. 이것은 결코 공무원 단체도 아니며; 그 특권은 모든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에게 결부되어 있으며; 아무리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그의 존재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성직자는 매일같이 그의 특권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귀족은 자기의 것을 유지하고 있으며; 귀족은 그것을 키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 군인으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좋은 소질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제3신분의 그것에 따라서 군역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귀족 증명서(*les preares de parchemin*)를 요구하는 이러한 척령이 나타난 것이 우리 시대에서가 아닌가! 최고 법원은 봉건영주의 특정에 대항하여 인민을 지지하고 다소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립되어진 것 같았으나; 최고 법원은 역할을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대단히 최근에 최고법원은 재판관과 의장 등의 모든 자리를 예외 없이 귀족에게 상설적으로 선물로 갖다 바쳤다. 지방의회와 도처에서의 상석권이 머지않아 귀족과 성직자간에 대체되어지도록 하면서 1787년 명사회의로 귀족은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상석권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내각에 의해서 여기에 동일하게 소집되어진 인민을 결

만 내지 2,600만이라는 주민수와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판단해보라.

마찬가지로 명백한 또 다른 원칙들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해답에 이르고자 한다면, 법률에 의해 문제를 부여받은 대부분의 시민 계급들이 특권 신분자들이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사회는 공통의 법률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공통 신분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드물게 허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가 공적인 활동과 동일한 비중을 갖거나 공통의 원칙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국민 전체의 크나큰 이익과 면제된 사람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과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려하는 것은 물상식한 것이다. 전체의 이익을 혼들려고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3신분의 너무나 자제된 요구로 인해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을 수년 내에 회상하게 될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항변하고 있는 명분의 가치에 다소 놀라게 될 것이며, 또한 감히 추구하고자 했던 뻔뻔스러운 비형평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놀라게 될 것이다.

제3신분에 대해 사실상의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자신들의 행위의 원칙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필리프(Philippe) 4세 치하에서는 삼부회에 하나의 평민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의지 있는 도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때부터 봉건적 노예 상태는 사라졌으며, 농촌은 수많은 신시민을 배출했다. 도시들은 확대되고 팽창되었다. 그곳에서 상업과 예술이 많은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켰다. 이 계층들에는 많은 여유로운 가족들이 존재했고, 교육을 잘 받았고 공적인 것에

과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아닌가? 또한 제3신분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제3신분이 제1신분 내에서의 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였다면!..... 결국, 매일 약해지고 있는 신분과 또는 19/20를 구성하고 있는 신분, 또는 특권층이 공통신분과 서로 점점 가까워져야만 할 것 같은 시기에서도 반대로 점점 더 서로 차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신분 중에서, 제3신분으로서는 가장 두려워 할 신분이 어느 것이겠는가? 성직자 중에서 본당 신부들이 본성적인 힘(la force des choses)에 의하여 그들이 소집된 역할을 맡게 될 때, 제3신분은 그를 위하여 성직자의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귀족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전체 국민의 비율로 볼 때 의지 있는 도시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져 두 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제3신분을 위해 두 개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 권한을 왜 주장하지 못했겠는가? 형평과 훌륭한 정치가 결합됨으로써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성장과 관련해서도 또한 불합리함이 과감하게 지적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난번 삼부회 이후 프랑스에 합병된 새로운 지방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새로운 지방이 1614년의 삼부회에서 가졌던 대표자수 이상으로 대표자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생산과 기술은 본국에서처럼 새로운 부, 새로운 조세, 새로운 주민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국의 성장과 비교하기가 너무나 용이한 성장이 있었을 터인데, 왜 1614년 삼부회에서 가졌던 대표자수 이상을 새로운 지방에 할당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고 싶다. 그들에게 접근 하려면 다른 식의 고려가 필요하다. 본인이 한 가지를 제시해보겠다. 귀족들에게 중세 고딕 시대의 언어와 태도를 오늘날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가? 제3신분에게 고대 노예 시대의 무기력하고 비참한 풍속으로 인해 18세기 말에 와서까지 괴로워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가? 제3신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고 존중한다면, 다른 신분 역시 당연히 제3신분을 존중할 것이다! 고대의 신분간 관계는 양쪽에서 모두 바뀌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제3신분은 그의 산업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가장 강한 모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제3신분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는커녕 그것을 돈으로 사는 데 동의했다. 사람들은 제3신분에게 그 권리를 복원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리를 판 것이다. 그리고 제3신분은 이를 사는 데 동의했다. 어쨌든 결국 제3신분은 권리를 소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에는 어렵잖은 형체에 불과했던 제3신분이 오늘날에는 국가적 실체가 되고 있다는 것. 이 오랜 변화의 기간 동안 귀족은 아무 탈없이 억압할 수 있는 열도당토않은 봉건적 실체이기를 그쳤다는 것. 귀족은 이제 어렵잖은 형체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야비한 곳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렵잖은 형체가 아직도 헛되이 전체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V. 제3신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구

삼부회에서는 신분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투표할 것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 될 수 있다: 제3신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특권 신분의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상식적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관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 외에 더이상 덧붙일 것은 없을 것이다. 제3신분으로서는 이러한 요구가 다른 두 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 명확하다.

특권 신분은 이 세 번째 신분과 동일한 영향력을 꺼려하며,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그들이 현재까지 한 계급에 대해 두 개의 계급으로 맞서온 부당한 우월성에 대해서는 전혀 위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기한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필요성을 대단히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미 20여 명의 저자들이 이러한 야망과 넓은 형태의 주장에 대해 논박했으므로 그 논리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나는 다만 하나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뿐이다. 프랑스에는 권력 남용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용은 어느 누군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제3신분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제3신분에게는 특히 해로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 남용을 향유하는 자들에게 거부권을 남겨두는 한 과연 이러한 권리 남용을 타파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힘없이 정의가 존재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특권 신분의 순수한 자비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고작 이것이 우리가 사회질서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관념일까?

이러한 주제를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들에 따라, 즉 모든 개별 이익과는 무관하게, 사회학을 형성하는 원칙들에 따라 이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문제에서 새로운 면을 접하게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관념을 깨버리지 않고는 제3

신분의 요구도 특권 계급의 기득권 옹호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의도를 가졌던 프랑스의 의지 있는 도시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지 있는 도시들은 최소한 두 개의 영향력 간의 균형을 주장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리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타월한 진실을 공언하게 된 셈이다. 다른 신분들에 대한 어느 특정 신분의 거부권은 서로의 이익이 너무나 상반되는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마비시킬 만한 권한이라는게 명확하니 말이다. 그리고 법률이 근본적으로 무능해서, 결코 개인별로 투표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진정 과반수를 무시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형성되어 있는 바와 같은 세 개의 신분이 개인별로 투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의문의 실체인 것이다. 답변은 부정적이다. 당연한 원칙에 의존해보면 그들은 결코 동일하게 투표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도 신분별로도 투표할 수 없다. 당신이 그들 속에서 확보한 얼마간의 비율로는 우리가 제안하는 목적, 즉 대표자 전체를 공통의 의사에 기속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설명과 증명을 필요로 한다. 제6장으로 이를 넘기게 되는 것을 허용해주었으면 한다. 진실이 혹시 잘못 비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점잖은 인사들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전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오직 특권 신분의 실수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특권층의 편을 들어주고 진실하고 정당한 것이 특권층의 힘에 있다고 말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그들로부터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